계약금 5%초과 납입계약자에 대한 지원 확인서

■ 목적물의 표시

단 지 명	마포 에피트 어바닉			
소 재 지	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17-1번지 일원			
계 약 일		동호수	동	호
성 명				(인)
생 년 월 일		연 락 처		

■ 지원내용

지원내용	지원대상	
계약금 5%초과 납입금의 연3% 예금이자 지원 (계약금 납입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전일까지)	시행위탁사 ㈜인사이트투 부담	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증 발급세대 (중도금 상환 및 잔금납부 완료세대) ※ 세부요건은 아래내용 참조

- 1. 본 지원 확인서는 분양조건변경(계약금 5%)에 따라 계약금 10%를 납입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한다.
- 2. 계약금 납입액이 5%초과한 금원(계약금의 5%)에 대하여 계약금 납입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전일까지의 연3% 예금이자 상당액을 지원하며,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증(중도금대출 상환 및 잔금납부 완료 등)을 발급받은 세대에 한해 지원한다.
- 3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지원 확인서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.
 - 공급계약을 중도 해지(또는 해제) 하는 경우 (단, 전매는 제외함)
 -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
 - 중도금 납입기일을 경과하여, 납입회차 및 미납금액에 관계없이, 연체일수가 육십(60)일을 초과한 경우가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
- 4. 지원방법
- (1) 입주지정 기간 내에 입주증 발급 시, 지정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 상환액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, 분양대금 잔금에서는 감면 또는 차감되지 않는다.
- (2) (소득처분) 위 (1)에서 대출없이 중도금을 납입한 경우 계약자에게 관련 세법 등에 따라 "소득처분(원천징수, 종합소득과세 등)"하여 지급하기로 하며, 지급시기는 입주지정일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.
- (3) 전매 등 계약자 명의변경이 생길 경우, 최종 입주증을 발급받는 자에 한해 지원한다.
- ※ 본 확인서에 근거한 지원은 향후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제세공과금 발생 시 계약자(매수인)가 부담하기로 한다.
- 5. 공급계약 해지(해제)시에는 본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, 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(공급금액의 10%) 및 연체료 등이 부과된다.
- 6. 본 지원 확인서에 따른 지원 관련사항은 시공사인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㈜, 시행수탁사인 코리아신탁㈜과 무관하며, 실질적 보장 주체는 시행위탁사㈜인사이트투임을 인지한다.

※ 본 지원 확인서의 원본은 시행위탁사 ㈜인사이트투에서 보관하고, 계약자는 사본 1부를 수령함

2025년 월 일

시행위탁사 ㈜인사이트투 (인)